

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24. 3. 15 규칙 제1301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민정원사 교육과정) ① 광명시 시민정원사(이하“시민정원사”라 한다)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이론 및 실습과정
2. 전문과정

② 시민정원사의 교육과정별 이수시간은 별표1과 같다.

③ 제1항의 전문과정 수강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이론 및 실습과정을 수료한 사람
2. 산림, 원예, 조경관련 학과 졸업 증명서가 있는 사람
3. 경기도 인증을 받은 시민정원사 교육기관에서 이론 및 실습과정을 수료한 사람

제3조(시민정원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 등)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민정원사 인증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발급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의 분실 및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대장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민정원사 인증기간 및 재인증) ① 시민정원사 최초 및 두번째 인증기간은 각 4년으로 하되, 세 번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.

② 최초로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후 두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96시간의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두 번째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후 세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48시간의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홍보) 시장은 시민정원사에 대한 정보를 학교, 복지관 등 녹지보전 및 정원문화 활동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에 인터넷 등으로 홍보하고,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시민정원사 교육과정(제2조 제2항 관련)

1. 이론 및 실습과정 : 56시간

교육분야	시간
계	56
식물이해	12
식물관리	19
정원조성	23
기타(개강식, 수료식)	2

2. 전문과정 : 120시간

교육분야	시간	비고
계	120	
식물이해	16	필수이수
식물관리	32	
정원조성	32	
자기개발	24	선택이수
선택교육	16	

[비고]

1. 이론 및 실습과정은 시민정원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을 말한다.
2. 전문과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민정원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을 말한다.
 - 가. 이론 및 실습과정을 수료한 사람
 - 나. 산림, 원예, 조경관련 학과 졸업증명서가 있는 사람
 - 다. 경기도 인증을 받은 시민정원사 교육기관에서 이론 및 실습과정을 수료한 사람

[별지 제1호서식]

시민정원사 인증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 20일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	
	(성별)		
	주소	전화번호	
교육 이수	이론 및 실습과정	교육기관명(전화번호)	교육기간 수료일자
	전문과정	교육기관명(전화번호)	교육기간 수료일자

「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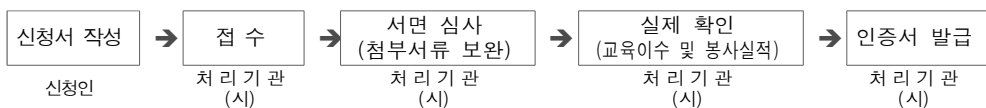
광명시장 귀하

신청인 첨부서류	1. 증명사진 2매 2.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. 전문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. 봉사실적 증빙자료 1부(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신청자 인적사항 2.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	

작성 방법

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(일자)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.

처리 절차

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

[별지 제2호서식]

인증번호 광명시 제 호



광명시 시민정원사 인증서

성 명 :

생년월일 :

교육기간 :

유효기간 :

「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3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시민정원사로 인증합니다.

년 월 일

광 명 시 장

직인

210mm × 297mm[백상지(1종) 120g/㎡]

[별지 제3호서식]

(앞쪽)

광명시 시민정원사 인증서



발급번호 :
성명 : (한자:)
생년월일 :
유효기간 :

「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3조제2항에 따라 광명시 시민정원사로 인증합니다.

년 월 일

광명시장

직인

54mm x 85mm [보존용지(1종) 120g/m²]

(뒤쪽)

연월일	기재사항 변경	확인인

유의사항

1. 시민정원사는 그 명의를 도용하거나 타인에게 이 자격증을 대여할 수 없습니다.
2. 시민정원사는 광명시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여야 합니다.
3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.
 - 가.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분실한 경우
 - 나. 시민정원사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
 - 다. 시민정원사 인증서의 기재사항변경 등이 있는 경우

54mm x 85mm [보존용지(1종) 120g/m²]

[별지 제4호서식]

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하고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
신 청 인	성명(한자) (성별)	생년월일	
	주소 (전화:)		
교육내역	이론 및 실습과정 기관명 및 교육기간	전문과정 교육기간	
	~		
발급내역 (재발급)	발급번호	발급일자	재발급 사유

「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3조제3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광명시장 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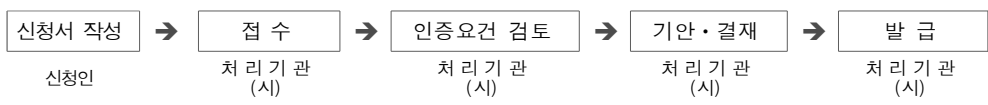
신청인 첨부서류	1. 시민정원사 이론 및 실습과정과 전문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. 2. 시민정원사 인증서(기재사항의 변경 및 훼손된 경우에 한정합니다) 3. 증명사진 1매.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이론 및 실습과정과 전문과정의 수수료 증 사본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

210mm×297mm(백상지 80g/m²)

